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24. 12. 18.(수)



행정복지위원회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7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5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0.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4
11.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7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9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31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3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7
16.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39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18.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3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09호
- 제출일: 2024년 11월 27일
- 제출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신종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상 용어의 정의 및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시행계획, 예방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2차 피해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Deepfake)*’ 사건과 더불어 과거부터 ‘N번방’, ‘서울대 N번방’ 과 같이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한 신종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 딥러닝(Deep Learning) + 가짜(Fake) 의 합성어로 딥러닝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기술

- 최초 사회적 아젠다로 떠올랐던 ‘N번방’ 사건 이후로도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세대·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를 입을 수 있게되면서 그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3년 기준, 5년전 2018년(1,315명) 보다 6배 이상 증가한 8,98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중, 피해자는 주로 10-20대로 나타나는데 (8,983명 중 6,726명으로 약 75%) 이는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이 더 용이한것이 특정 세대가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 상담지원, ② 삭제지원, ③ 연계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는 현재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AI기본법」 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에서 지원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의 차원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은 의의가 있습니다.

- 현재, 2024년 9월 기준 전국 11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대구 관내 자치구의 경우 북구와 수성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 해당 사건들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국회의 동향,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동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안건에 대한 자치법규 입안 과정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05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27일
-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 등 결혼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급감하는 혼인률에 따른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결혼 및 결혼 준비 등과 관련한 교육, 정보, 사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 통계청 결과(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3천여건으로 10년 전보다 40%가 줄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2024년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 이 같은 인구 비상사태 현상은 관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관내 자치구의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을 분석 결과 순위 다음으로 달성군이 증감률이 가장 낮은 것(- 8.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단위: 건, %
						연평균 증감률
전국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5.1
대구 광역	9,880	8,340	7,287	7,497	8,150	-4.7
중구	363	311	286	357	459	6.0
동구	1,510	1,288	1,224	1,254	1,359	-2.6
서구	605	492	415	407	539	-2.8
남구	625	521	467	467	547	-3.3
북구	1,810	1,546	1,335	1,394	1,361	-6.9
수성구	1,213	1,072	1,007	946	997	-4.8
달서구	2,249	1,895	1,532	1,599	1,789	-5.6
달성군	1,505	1,215	1,021	1,073	1,063	-8.3
군위군	64	50	34	33	36	-13.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 우리 달성군은 산업단지 조성·택지개발 등으로 2024년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합계출산율 1위, 신혼부부 비율은 전국 6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올해들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올해 4월 26만명이 깨짐, 현재 25만 7천여명)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4. 7. 26. 노컷뉴스, “대구 달성군 합계출산율 1.03명... 전국 1위”

○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제명에 ‘결혼장려’로 된 조례는 2024년 11월 기준 5곳에 그치나, 1) 출생 지원, 2) 결혼친화도시, 3) 결혼친화환경, 4) 인구증가, 5) 인구정책 등 관련 조례로써 작은 결혼식, 미혼만남 주선, 결혼친화 서포터즈단과 같은 지방소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결혼장려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 달성군도 최근 결혼장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관광 상품을 미혼남녀 만남 주선을 목표로 “여행하여 인연을 만나다 청춘달성”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결혼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본 조례안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04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27일
-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고, 전동보장구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보험 가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험회사 선정·보험 가입 등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보험금 청구 및 보험증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고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책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을 완화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험 가입 사항과 그 지원책을 고려한 조문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24.11.7. 기준) 3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도비 매칭, 시도비 재배정, 자체사업 등 다양한 지원조건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신규편성하여 제출한 상황입니다.
- 다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부여한 책무에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등과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장애인등' 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머지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 및 사업의 적용대상과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07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27일
- 제 출 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위협의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그 역할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처리절차·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상 용어의 정의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파기·유출등의 대응·안전조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안 제15조~제16조)
- 수수료 청구·납부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5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위협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으로, 2023년 12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하여 기관 여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개정 협조요청을 시달하였습니다.
- 2024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를 포함하여 현재('24.11.7. 기준)까지 73곳의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및 책임 부여,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와 유출 등에 대한 대응, 안전조치 등 그 절차와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 관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상정되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그 산하기관이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관리하는 데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06호
- 제출일: 2024년 11월 27일
- 제출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2-1단계 개발사업지구의 준공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 경계변경 시('24.9.20.)일부 지번이 누락되어, 누락 지번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누락지번 및 정정지번 법정리 변경(안 별표 4)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4. 9. 20.에 개정된 사항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 2024. 9. 20.에 해당 조례의 관할구역 변경 사항을 조문내용을 개정하였으나, 사업자 신청단계(LH) 시 누락된 지번이 확인되었습니다.
- 누락된 지번으로 인해 확정측량 및 국가산단 준공 승인이 불가하여 LH측에서 조례 개정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요청(2024. 11. 13.)하였습니다.
- 신속한 지번 변경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을 완료하기 위함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68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공개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정책실명제 운영평가 및 평가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말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 하는 제도로써, 1998년 7월 「사무관리규정」(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이러한 ‘정책실명제’에 대한 세부 규정은 같은 법 제63조의5에서 2017년 개정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개정 이후 제63조의5제2항의 규정이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관련하여 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는 관련 규칙을 2008년에 제정하였으며 2023년 12월 폐지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의 운영 규칙을 대신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더욱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것임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69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따른 안전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위원 임기 조항 삭제(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 본 조례는 창조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①장기발전, ②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③교육비지원, ④향토문화 계승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해 2010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자치 군정자문위원회는 2011년 처음 구성되어 2024년 현재 기준, 총 4회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회 개최실적

구분	회의 날짜	회의내용	비고
2012년	2012.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사유 및 운영방향 설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및 소위원회 배정 관련 설명 · 군정방침 및 2012년도 역점시책 설명 	
2015년	2015.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6기 주요현안사항 보고(정책제언 및 토론) 	
2016년	2016.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성과 및 민선6기 주요 군정 추진상황 보고 ·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사업 심사(정책제언 및 토론) 	
2017년	2017.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달성군정 베스트20 선정 2차 심사 · 2017 벤치마킹 우수사례 심사 	

- 검토 결과 2017년 이후 해당 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어,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 행정방향*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제2항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시행”. 2023. 11. 10. 보도자료

- 따라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위원회를 ‘위원회 정비기준’ (①페이지, ②통폐합, ③협의체 전환, ④비상설화, ⑤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0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문이 사라진 바 있습니다. 이에 폐지된 법령의 위임사항을 명기한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서 명시한 경과조치에 폐지조례안 내 운영된 자치분권협의회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1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예산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계층 참여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경품 등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안 제 11조제4항)
-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신설(안 제14조제2호)
-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경품 제공 근거 마련(안 제26조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산과정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2024년 7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당연직 위원 및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당연직 회원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타당합니다.
- 또한, 기존 조문내용에서 명기한 “사회적약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분화 및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또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심사하도록 2024년 9월 개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2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5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 : 4,022백만 원
- (재)달성교육재단 운영비 : 917백만 원
 -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546백만 원, 기본운영비 347백만 원, 자산취득비 24백만 원
- (재)달성교육재단 사업비 : 3,105백만 원
 - 사업대상자 확대 및 새로운 프로그램 추가로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
 - 진로진학사업 : 150백만 원, 글로벌 교육지원 2,730백만 원, 4차 산업 교육지원사업 100백만 원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단 운영·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달성교육재단은 2000년 설립된 (재)달성장학재단이 단순 장학사업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입시 등 교육지원사업을 더해 2023년 전환하여 출범하였습니다.

- 2025년 출연금은 4,022백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3,301백만원 대비 22% 가량(721백만원) 증액되었고, 전체 출연금의 약 23%(917백만원)를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진로진학 및 영어학습 지원 150백만 원, 글로벌 교육지원 2,730백만 원, 4차 산업 교육지원사업 100백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105백만 원입니다.
출연금 예산요구액이 작년대비 증액된 이유는 1) 원어민 교육지원 (글로벌 교육지원) 확대,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일타강사초청 강연 등의 신규사업 편성이 있습니다.

- 현재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학군을 이유로 관내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작년 달성장학재단을 달성교육재단으로 전환 출범하였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기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인재육성 사업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3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추가(변경) 출연금액 : 100억 원
- 2024년 (재)달성교육재단 기본재산 적립: 100억 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계획의 목적은 군민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재)달성교육재단은 2024년 11월 기준 322억원 정도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군출연	농협	대구은행	개인기탁
금 액	32,272	26,434	5,150	282	406
비 율	100	81.9	15.9	0.9	1.3

- 현 장학기금 보유액 322억 7천만원에서 본 출연금(100억)을 추가 편입하여 ①장학사업 확대, ②군민 교육수요에 부응을 위한 교육정책 및 사업 추진등을 위해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재)달성교육재단은 2025년 ①장학금 지원 사업 확대, ②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③유명강사 초청강연 사업, ④미래/신산업 분야 체험기회 제공사업 등의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 확대 및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속, 우리 달성군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써,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4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급증하는 주민들의 정원이용에 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주민들의 정원 이용 수요에 대해 지방정원이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 시설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뜻합니다.
- 기후변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 대처를 위해 대구광역시는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2021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우리 군은 2023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대에 지방정원(세천늪 테마정원) 조성계획이 승인(2024년 10월 28일)됨에 따라 지방정원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수목원정원법)의 조례위임사항(제18조의5 정원의 입장료)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건은 상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10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2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7,132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을 출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2023년도 보통세는 226,096,535천원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7,132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의뢰과제를 수행하거나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등을 맡고 있음.
- 본 계획안은, 법정의무경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필히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관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 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결과, 공무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5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

-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창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달성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제311회 달성군의회에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을 상정, 의결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가창면민복지회관 확장 건립 요구를 수용하여 가창면민복지회관의 시설, 연면적을 변경하고 총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함.

○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 신축

- 달성군 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되었으나, 임대사업장 공간이 협소하여 수요 대응이 어려움.
- 이에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장이전하여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수요를 감당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 건

- 위 치: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
- 규 모: 부지면적 2,321㎡, 건물 연면적 3,288㎡ (기존 1,450㎡)
-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스크린파크골프장, 지하주차장 등
- 총사업비: 125억 원 정도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22. 09. : 가창면 변영회 복지회관 건립 건의
 - 2022. 10. :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 2023. 07. : 주민설명회 개최(3회)
 - 2024. 02. : 지하주차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추가 요청 반영
 - 2024. 07. : 변경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완료
 - 2025. 0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5. 12. : 착공(예정)
 - 2027. 06. : 준공(예정)

○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 신축

- 위 치: 현풍읍 원교리 583-1번지 일원
- 규 모: 부지면적 5,390㎡, 연면적 997㎡
- 주요시설: 지상1층(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 771㎡, 사무실 113㎡
지상2층(직원 휴게실 113㎡)
실습교육장 300㎡, 농기계 외부 적재장 1,000㎡

- 총사업비: 35억 원 정도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22. 09. :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계획 수립
 - 2023. 06.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 2024. 08. : 부지매입 완료
 - 2025. 04. :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
 - 2025. 11. : 준공
 - 2025. 12. : 임대사업장 이전 완료(예정)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 건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창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며,
- 기존 안 1,450㎡에서 시설 배치에 대해 주민간담회를 거쳐 ①복지회관 연면적 확대, ②지하공간 활용, ③지하주차장 / 다목적체육시설추가 등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연면적 3,288㎡로 확대 및 주민 욕구가 반영된 시설을 배치하게 되면서 총 사업비가 125억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 신축 건물은 관내 농업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대사업장 공간을 확장 이전하기 위함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 정도입니다.

- 이상 2건은 달성군 관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실 사용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11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2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호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 이 신설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 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수행을 위한 개정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규정사항 신설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대한 기관을 본 조례안을 통해 규정한 바, 추후 지정된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5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6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성복지재단 출연 : 17억 3,115만 원
 -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 7억 3,400만 원
 -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527, 기본경비 205, 사업비·예비비 2
 - 달성복지재단 사업비 : 9억 9,715만 원
 - 보육환경에 따른 차등 해소와 모든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사업(특별활동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재)달성복지재단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국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본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2025년 출연금은 17억 3,115만 원으로 2024년 출연금 6억 8,500만 원 보다 10억 4,615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단 운영비가 전년대비 4,900만 원 증액된 7억 3,400만 원, 새로이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비 9억 8,715만 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전출금이 편성됨에 따라 출연금이 10억원 가량 증액된 바, 정부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복리를 증진하는 사안으로 본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8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운영비 증가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인상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규정 구체화(안 제13조)
- 이용료 및 사용료 변경(안 별표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운영비 증가를 감당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료 및 이용료 금액 현실화 및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는 주민복지국 소관 시설로써 문화복지프로그램, 수영장, 헬스장 등을 운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복지공간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요금 중 하나를 예시로 검토할 때에 주 5회 성인 수영요금 기준 2003년 7만원, 2015년 7만 7천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 동결된 2015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평균 2%의 상승률을 보이며 2024년에는 2015년 대비 19.98% 증가*하였습니다.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발췌
- 또한 관내 타 자치구와 수영시설 이용요금을 비교하였을 때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7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달성군 보훈회관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된 바, 의회 동의를 얻고 재계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 보훈회관	옥포읍 비슬로458길 12	지상4층 (연면적 1,313.69㎡)	2명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협의회장	관리소장	계약직
인 원	2명	1명	1명	-

라.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80점 이상 시 재계약

4.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9. : 재계약 서류 접수
- 2024.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024. 11. : 의회 동의
- 2024. 12. : 재계약 체결 및 공보 게재
- 2025. 1. : 위·수탁 개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024년도 예산 78백만원(전액 군비)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보훈회관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와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보훈회관은 2015년 대구에서는 최초로 개소하여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보훈가족과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는 2016년 처음 수탁기간으로 선정 된 이후, 총 9년간 3회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2024. 12. 31.)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 보훈단체 협의회가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오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①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②경제적 효율성, ③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86.6점으로 적격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인 운영 및 달성군 보훈회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행정재산임을 고려할 때,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더불어, 관리책임부서는 위탁기관이 추후 서비스 개선계획(조직 중간역할) 및 추진계획(권익신장 및 복리 증진)을 잘 이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79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이 폐지된 바 이 규정과 연관된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수정(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생활보장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이 2024년 10월 폐지됨에 따라, 본 훈령을 준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이 현행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됨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 그에 따라 해당 조문을 준용하고 있던 조례의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① 본 조례 제4조제2항 조문 내용상 폐지된 훈령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② 관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문을 따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